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관리업무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 규정」 등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및 복지정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규정에 대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나, 완전 파기가 어렵거나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1년 및 2023년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면서 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을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파기하거나 개인정보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